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 ○ 경로당 신축·재건축·증축·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관련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무의 투명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 ○ 경로당 신축·재건축·증축·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비 지원 및 지원기준 규정 신설 (안 제5조제1항제6호, 제5조제3항) : 「성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」 준용

3. 참고사항
 가. 관련법령 :「노인복지법」,「성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」
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 다. 입법예고 : 2015. 11.5. ~ 11.21. (21일간)
 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마.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동의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경로당 신축 · 재건축 · 증축 ·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비

제5조제3항 중 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”를 “를 준용하고,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은 「성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」를 준용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운영비등 지원) ①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	제5조(운영비등 지원) ①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6. 경로당 신축·재건축·증축·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비
6. (생 략)	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「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	③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를 준용하고,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은 「성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」를 준용한다.